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강화〉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567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4
1.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정의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4
2.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8
3. 심리부검 자료 요청	10
4. 응급의료기관과의 자살시도자등의 정보 연계	12
5. 자살예방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16
6. 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	19
7. 기타	23
8.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27

I. 개요

1.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56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4.

(3) 회 부 일 : 2026. 2. 5.

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사회·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자살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는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경찰·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살 원인과 자살예방정책 국내·외 사례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 원인 등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자살예방 연구에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음.

이 밖에 자살시도자 구조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및 사망·상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 학교,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정보 범위에 자살사건 발생 시각·장소, 자살시도 방식 등을 포함함(안 제12조의2제4항).

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자살 원인 및 자살 예방사례 등 자살예방 관련 분석·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자살예방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제5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 관련 통계·연구 등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하여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의5 신설).

사.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업무를 하는 하는 기관에 대해 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1.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정의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¹⁾ 또는 자살예방센터²⁾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우개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6호 및 안 제22조의2 신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의2(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란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u><신설></u>	제22조의2(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신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애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상담·지원 2.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폭력 피해 구제 및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현행	개정안
	<u>위한 지원</u> 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의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현황과 과제(2025.12.)’에 따르면,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인력의 소진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살예방센터는 87.5%의 기관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56.8%,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50.0%의 기관이 높은 인력 소진 수준이라고 응답하는 등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인력 소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복지 등의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며, 종사자를 근무환경에서의 폭력과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폭넓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지원센터를 두는 방법 외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또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로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보호를 규정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어떤 것이 보다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에 대하여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나. 검토의견

- 자살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나 자살예방사업 종사자가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³⁾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

3) 예컨대, 「[단독] 자살 신고에 출동… “문 부렸다 소송 당할라” 열쇠공 부르는 경찰(2024.2.1.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01/123328778/1>)」에 따르면, 2023. 12. 8. 오전 2시경 어느 주택에 사는 20대 여성 A씨가 자살하려는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에 즉시 경찰관이 출동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경찰관이 끈질기게 문을 두드린 끝에 A씨가 문을 열었을 때 자해가 확인되었으며, 이후 응급조치에 성공함.

하여 면책 조항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법률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가 있음⁴⁾.

□ 다만, 이러한 면책 조항은 특례로서 관련 입법례를 찾아보면 총칙보다는 주로 보칙에 위치하는 경우⁵⁾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문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5) 예컨대 「의료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은 적극행정등에 대한 면책 조항을 보칙에 두고 있음.

「의료법」

제8장 보칙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6장 보칙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3. 심리부검 자료 요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심리부검⁶⁾의 대상이 19세 미만의 자살자인 경우 교육부, 학교 및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생략)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19세 미만의 자살자의 경우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19세 미만 자살자와 관련된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어 19세 미만 청소년⁷⁾의 자살예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자살자 수는 2023년 370명, 2024년 372명, 2025년 392명(잠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자료 요청의 대상인 기관을 교육 기관으로 한정하여 그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도 자살자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료요청 대상 기관에 청소년 관련 시설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8) 예컨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들 수 있을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4. 응급의료기관과의 자살시도자등 정보 연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9)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¹⁰⁾을 통하여 수집·보유하는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u>주소 및 연락처</u> 로 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주소, 연락처, 국적, 자살사건 발생 시각·장소, 자살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
<신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10) 응급의료정보통신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현행	개정안
⑤·⑥ (생략)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하며, 정보의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u>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 ----- ----- --. ----- ----- ----- -----. ⑨ ----- -----제4항 및 제5항-----제7항----- -----제8항-----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의 장¹¹⁾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¹²⁾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정보¹³⁾를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밖에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하여 국적, 자살사건 발생 시각·장소, 자살 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 등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되고,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되는 자살시도자등의 손상기전, 신체 손상의 의도성 여부, 진료 결과 등 정보의 연계까지도 이루어져 자살예방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행법 제12조의2제5항¹⁴⁾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정보의 삭제

11)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말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12)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을 알게 된 경우 자살시도자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삭제 <2022. 2. 3.>

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14) 현행법 기준 제12조의2제5항이고, 개정안 기준으로는 같은 조 제6항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도 자살시도자등에게 해당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5. 자살예방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 연구의 강화를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부설기관으로서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4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 ④ (생략)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 내 부설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등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내·외 자살의 동향 및 원인에 대한 분석·연구 2. 국내·외 자살예방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연구 3.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연구 4. 경제적·사회적 지표를 활용한 지역별 자살위험성 평가 5.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연구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현행	개정안
⑤ ~ ⑧ (생략)	연구 등에 관한 사항 ⑥ ~ ⑨ (현행 제5항부터 제8항 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¹⁵⁾할 경우, 자살예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자살예방 정책연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12조의4제2항제8호¹⁶⁾에 이미 자살예방 연구·개발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업무로서 규정되어 있고, 현재 동 재단의 정책연구부에서 자살예방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과 현재의 운영방식을 수정·보완하는 방안 간 비교·검토를 통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15) 유사한 입법례로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음.

「경찰대학 설치법」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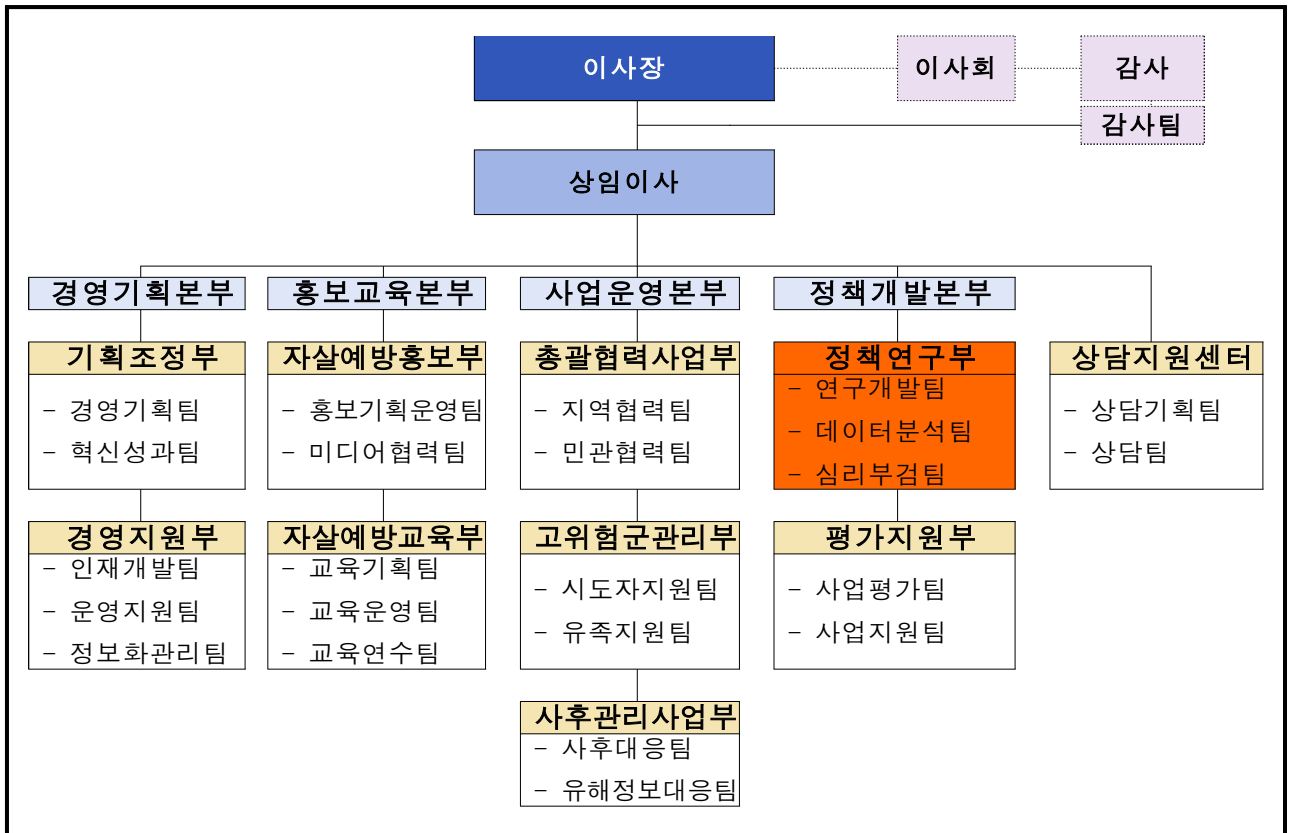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자살예방 연구·개발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직도 >



*자료: 보건복지부

6. 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 등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결합 및 결합된 정보의 외부 반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3¹⁷⁾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자살통계의 작성, 자살 및 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

17)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회보장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2. <u>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보유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3. <u>그 밖에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② <u>제1항에 따른 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을 준용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의 결합 및 외부 반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의3¹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다른 보건복지분야 정보와 결합된 정보의 형태로서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이나 통계 작성, 연구분석 등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은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안 제12조의5에서의 정보 결합이 가명정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와 결부된 비밀 유지 의무나 벌칙 등 그 밖의 조문¹⁹⁾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수

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 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9)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

규정되어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만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의5제2항에 대하여 유사 입법례²⁰⁾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20) 「암관리법」

제9조의2(암데이터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데이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1.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2. 암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가명정보 중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암데이터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가명처리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7. 기타

- 개정안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 기관 사이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 ① 빈곤·채무·실업, 장애·질병·노령, 폭력·재난 피해, 가정문제 등 다양한 고충에 관하여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기관·단체(이하 “취약계층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및 자살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자살위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자살위험성 판정도구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정보</u>

현행	개정안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u>시스템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기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판정 도구의 개발·보급 및 정보시스템간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④ <u>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에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⑤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담 등 지원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 (생략)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6항- ----- ----- -----.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제23조제3항은 안 제12조의2제7항²¹⁾에 따른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상담 지원 등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상담 등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안 제23조제3항을 통하여 비용을 지원하려는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은 이미 국비 및 지방비 또는 국비 전액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안 제23조제3항의 취지는 현행 운영 체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임.

21) 현행법 기준 제12조의2제6항이고, 개정안 기준으로는 같은 조 제7항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025년 및 2026년 자살예방센터 등 국비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국고보조율
자살예방센터 ²²⁾	14,657	21,907	50%
정신건강복지센터 ²³⁾	94,711	98,751	50%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²⁴⁾	6,811	7,722	100%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안 부칙은 시행일에 대하여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의 근거인 안 제3조의2에 대하여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 시행 이전에 있었던 자살 구조 행위로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22)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3346-302)의 내역사업인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서 집행

23)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3346-301)의 내역사업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서 집행

24)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3346-302)의 내역사업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에서 집행

8.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일련의 방안으로 법안 취지에 공감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 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가 필요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서 안 제12조의5에 따른 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 가능하고, 개별법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별법 간 관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며, 가명정보 처리 및 제공에 관한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규율의 일관성이 저해됨.

- (경찰청)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안 제12조의2제4항에서 자살사건 발생 시각'은 시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시도 시점은 긴박한 구조현장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신고접수 시각, 발생 장소'로 수정이 필요함.

현장에서 '자살시도 방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도자의 반발 우려가 있음. 방식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 예시(목매·추락·약물사용·확인불가 등) 명시 또는 삭제 필요함.

제공 대상 정보 확대 시 확인 불가 정보의 확인 시도로 인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확인 불가 정보는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이 필요함.

□ (소방청) 안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관련, 향후 소방청과 자살예방센터 간에도 응급의료기관처럼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안 제12조의2제4항에서 자살시도 및 자살사망은 자살시도 수단, 방법, 재시도율 등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에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 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정보 범위에 ‘성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안 제20조의2 관련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시도 지방자치단위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자살예방을 위한 각 부처 및 민관협력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

2024년 광역자치체별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소진예방 및 역량강화 사업 수행 현황

번호	지역	사업명	2024 사업내용	대상
1	서울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신규과정: 자치구 자살예방사업 신규직원 교육 2. 실무과정: 자살예방 응급요원 교육 3. 전문과정: 동기면담교육, 상담기법교육, 고위험군 위기개입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실무자
		실무자 외상심리지원	실무자 외상심리지원 연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실무자
2	부산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자살중재기술훈련프로그램(ASIST) 2.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3.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교육 4. 자살예방 프로그램 강사 양성 교육 5. 청소년 자해예방교육 「Are you ok?」 매뉴얼 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자살예방 실무자 여가 활동 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 2. 쉼과 회복을 위한 제주 힐링 프로그램 3. 자살예방 실무자 정신건강 증진사업 욕구조사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실무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실무자
		실무자 외상심리지원	1. 대상자 자살을 경험한 실무자 회복지원 상담(4회기) 2. 회복지원 상담 전문 인프라 구축 및 상담매뉴얼 배포	지역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련 업무 실무자
3	대구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신규교육 및 연차별 맞춤 역량강화교육 운영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유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정신건강 고위험군 전문상담 연계 2. 자살예방실무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지역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련 업무 실무자
4	인천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자살예방 및 자살유족 전담인력 역량강화교육 2. 자살중재기술훈련프로그램(ASIST)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심리지원 워크숍 2. 종사자 심리적 외상회복 치료비 지원 3. 직무소진예방 및 심리회복지원 물품 제작 및 배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종사자
5	광주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정신건강사업 실무자 안전증진 및 응급처치교육 2. 자살 및 정신응급실무자(합동대응센터) 워크숍 3. 자살유족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4. 자살 및 정신응급 전담인력(위기개입팀)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5. 자살예방활동 전문가 양성 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자살 및 정신응급 전담인력 소진 워크숍 2.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소진 워크숍 3. 지역 정신건강수행기관 실무자 소진 워크숍	

번호	지역	사업명	2024 사업내용	대상
6	대전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자살위기대응 전문가 역량강화교육 - 자살중재기술훈련프로그램(ASIST), 자살시도중재 협상 교육 2. 아동청소년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3. 지역사회 자살예방 주요이슈 및 정책 반영 교육	대전시 복지 및 보건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중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정신건강 힐링지원사업: 공모형, 캠프형, 프로그램 형, 연찬회	자살예방사업 공무원·실무자
7	울산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전화상담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2. 중증정신질환 대상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전화상담 실무자 정신재활시설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자살예방실무자 누리보듬 힐링체험 2. 자살예방실무자 누리보듬 힐링이벤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실무자 외상심리지원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분야 실무자 회복 상담지원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감정노동자 생명존중사업	감정노동자 위한 공감 솔루션 프로그램:힐링프로그램 (원예심리치료, 다도), 모바일 심리상담 프로그램	간호사,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등
8	세종	전담인력 역량강화	경찰·소방위기대응 역량강화교육: 정신응급 및 자살 위기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방안 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자살예방 전담인력 소진방지 워크숍 ‘함께하는 씬’	관내 자살예방 전담인력
9	경기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자살예방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 자살예방사업 홍보 등 2.. 자살예방 신규인력 워크숍 「G-신규 체크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소진관리 프로그램 「하루쉼」 2. 실무자 화합 및 소통 프로그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실무자 외상심리지원	1. 자살예방 인력 정신건강 심층상담 및 홍보	경기도 31개 시군 자살예방센터 실무자
10	강원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자살 유족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2.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 공통직무교육, 전문성 강화교육, 필수교육, 역량강화교육 등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자살예방 실무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2. 자살예방 실무자 소진예방 교육	유관기관 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11	충북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수용전념치료 심화 교육 2. 자살위기대응 협상 능력 강화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자살예방 실무자 치료비 지원 2. 자살예방 실무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 충북 광역센터 실무자 대상 소진예방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교육 - 도내 기초센터 실무자 프로그램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번호	지역	사업명	2024 사업내용	대상
			3. 자살예방 실무자 물품지원 서비스(안전물품) 4. 자살예방 실무자 맞춤형 지원 - 신입 경찰공무원 대상 자살예방 역량강화 교육 - 소방공무원 대상 맞춤형 물품 지원	
12	충남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온라인 교육 시스템 '잇길배움터' 운영 2. '생명이어달리기' 교육 강사 보수교육 및 콘텐츠 제작	충남 15개 시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정신건강 현황조사 2. 심리지원 프로그램: 전문상담 및 치료비 지원 여행지원, 스포츠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3. 힐링캠프 4. 비대면 심리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13	전북	전담인력 역량강화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자살예방 전담인력 동아리 지원 2. 자살예방 전담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3. 자살예방 전담인력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14	전남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종사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실무자 소진 예방 프로그램 진행 2. 실무자 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종사자
15	경북	전담인력 역량강화	1. 보건소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교육 2. 자살예방사업 전문가 교육 3. 자살예방사업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종사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직무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2. 스트레스 관리 키트 배포	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16	경남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실무자 역량강화 기초교육(2회) 2. 실무자 역량강화 심화교육(1회) 3. 실무자 온보딩(슈퍼비전)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실무자 단기 상담 지원 '나의 해방일지'운영 2. 실무자 소진예방 숲 힐링프로그램 운영 3. 실무자 발전대회 운영	도내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
17	제주	전담인력 역량강화	1.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소진방지	1. 실무자 트라우마 회복 심리지원 2. 소진예방프로그램 힐링워크숍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